

충청북도계증명등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년 12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- 수수료요율이 12년이상 미조정으로 인하여 원가보상이 36.2%로서 현실성이 없음
- 관계법령의 개폐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조례항목을 폐지, 명칭변경,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

※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분석자료 시달 (내무부)

□ 개정골자

○ 요율인상

- . 대 상 : 8 항목 (총 30 항목)
- . 인 상 을 : 평균 6.8% 인상 (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: '94. 11. 21)

※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30항목중 조정이 시급한 8항목 평균 6.8% 인상

구 분	기준	현 요	행 율	조 요	정 율	현행 대 조정	
						증감액	비 율
화 계 증 명	1동	500원		600원	100원	20.0%	
소방시설 완비증명	"	500		600	100	20.0	
공유재산 신규대부	1건	500		600	100	20.0	
공유재산 계속대부	"	300		350	50	16.6	
도축검사 (소, 말)	1두	400		500	100	25.0	
도축검사 (돼지, 양)	"	80		130	50	62.5	
중기저당권 설정등록	1건	1,000		1,200	200	20.0	
중기저당권 변경말소	"	1,000		1,200	200	20.0	

○ 폐지 및 명칭변경

- 대 상 : 50항목 (삭제 42항목, 명칭변경 8항목)
- 정비사유 : 관련상위법 개폐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동에 따라 조례내용중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
○ 신설항목

- 대 상 : 원자재소요량 증명 (가소요량 3,500원, 확정소요량 1,200원)
- 신설사유 :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어 신설 (대외무역관리규정 제5-3-3조)
※ 경기도등 7개시도 조례반영 시행

□ 참 부

1.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.
2. 신, 구조문대비표 1부.
3. 관련법규 발췌 1부.
4. 기타 참고자료 (삭제항목및 사유, 명칭변경 및 신설항목)